

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
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최봉희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6. 2. 2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

##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680호로 2026년 1월 19일 최봉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최근 사회적 위험 증가, 1인 가구 확대, 고립·은둔 문제의 심화 등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- 나. 현재 영등포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,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가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- 다. 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, 역할, 의무 및 해촉 기준 등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, 교육 및 활동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 책무 (안 제3조)
- 다.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위촉 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역할, 의무 및 해촉 (안 제6조~제8조)
- 마. 교육 및 역량강화, 활동지원 (안 제9조~제10조)
- 바. 표창 (안 제11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6. 1. 20.~2026. 1. 25.) 결과: 의견 없음

### 5. 검토의견

#### 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, 극심한 생활고에 처해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으며, 이에 따라 이른바 1)세 모녀법이 마련 되는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음.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---

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

2) 제9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,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.

-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20년부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 및 시행하고 있으며, 영등포구는 2025년 12월 기준 총 1,32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·운영하고 있음.

####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개념

-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빈곤·돌봄 위기가구, 주거 취약가구 등 신(新) 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·효율적 대응 위해 구축하는 인적안전망으로서,
-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·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

-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조례로 제도화하여, 구성·위촉·역할·의무·교육 및 활동지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##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‘위기가구’와 ‘명예사회복지공무원’의 개념을 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.

2) 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(이하 이 조에서 “위기가구”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협력을 촉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(구성)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통장, 직능단체 회원, 생활업종 종사자, 신고의무자 등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.
- 안 제5조(위촉)는 대상자 선정 방식을 공개모집, 동장 추천, 관련 기관·단체 추천으로 명시하고, 위촉기간 및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인력 확보와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안 제6조(역할)는 위기가구 발굴·신고, 주민 참여 유도·홍보, 물적·인적자원 연계, 신고체계 활용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여,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유도하고자 함.
- 안 제7조(의무)는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, 위기가구 및 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안 제8조(해촉)는 품위 손상, 비밀누설, 장기간 미활동 등 해촉 사유를 명시함으로써,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- 안 제9조(교육 및 역량강화)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·연수 실시 및 관련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.

- 안 제10조(활동지원)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자발적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.
- 안 제11조(표창)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,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.

#### 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, 행정 주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것임.
-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·위촉·역할·의무 및 해촉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, 교육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, 제도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본 조례안은 기 운영 중인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를 체계화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1

##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**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**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(이하 이 조에서 “위기가구”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
2.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
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민관협력)**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,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(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)에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2

## 긴급복지지원법

**제7조의2(위기상황의 발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,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